



[등록 번호 : 20220295]

홈페이지주소 및 대표이메일

[최초 등록일 : 2022.04.06]

<http://www.조선대가.kr>

[최종 등록일 : 2024.07.30]

이메일:kangtg12344@naver.com

조선불고기밀면

정 보 공 개 서

(주)조선대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주)조선대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에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4-4(평거동)

대 표 전 화 : 055-746-0803

대표 팩스번호 : 055-748-7781

담당부서 전화 : 055-746-0803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8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9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6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0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2
VIII .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35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36

[별첨1] 2022년,2023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1부

[별첨2] 2023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 용 브랜 드	주 소			
(주)조선대가	조선불고기밀면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4-4(평거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2.28	2022.04.01	김동준	055-746-0803	055-746-0803
	법인등록번호	191111-0102439	사업자등록번호	495-86-02699	

1)2015.05.18.조선불고기밀면 창업,2022.04.29.(주)조선대가로 법인전환함

2)2023.03.23가맹본부주소를 진주시 새들말로 34-3(평거동)에서 새들말로 34-4로 이전함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에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주)조선대가 김동준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4-4(평거동)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동준	055-746-0803	055-746-0803
사내이사	(주)조선대가 오윤경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4-4(평거동)		
			사내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윤경	055-746-0803	055-746-0803
감 사	(주)조선대가 민정임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4-4(평거동)		
			감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정임	055-746-0803	055-746-080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조선불고기 밀면	조선불고기 밀면	2022.04.29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4-3(평거동)	김동준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조선불고기밀면"이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조선불고기밀면	맛과 즐거움이 가득한 조선불고기밀면
상 호	조선불고기밀면()점	당사는 맛 좋은 불고기밀면 전문점입니다.
서비스표 상 표		상표등록번호 : 40-1814804-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022년	207,332	63,717	143,615	345,377	-99,667	93,615
2023년	213,121	67,726	145,395	445,870	-1,045	1,780

※ 가맹본부 (주)조선대가는 2022년 04월 01일에 설립되어 개인사업자 조선가야밀면의 가맹사업을 2022년 04월29일에 포괄양수하여 운영중으로 2021년 재무제표가 없음
[별첨1] 2022년,2023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불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조선불고기 밀면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

※ 가맹본부 (주)조선대가는 2023년말 가맹점 0개로 가맹점매출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대표이사	김동준	2015.05.18 ~ 022.04.19	조선불고기밀면 사장	사업총괄
사내이사	오윤경	2014.10.22 ~ 현재	조선 사장	사업총괄
감 사	민정임	2022.03.04 ~ 현재	감 사	감 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1

[별첨2] 2023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서비스표 (43류)	2021년 07월 09일 출원 2021년 12월 27일 등록	등록번호 40-1814804-0000	김동준	2031년 12월27일

- 귀하는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 제품, 공급품(이하 '제품 등'이라고 한다.) 및 기타 점포 설비 등에 부착된 "갭"의 상호, 상표, 로고 등 "갭"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표지와 형상(이하 '상호 등'이라고 한다.)을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3 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 귀하는 '상호 등'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에게 책임을 부담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귀하는 별도로 ‘상호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는 당사의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명시
하여야 한다.
4. 귀하는 ‘상호 등을 제 3 자가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조선불고기밀면]가맹사업 현황

1. [조선불고기밀면]을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사실이 없음

2. [조선불고기밀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선불고기밀면	조선불고기밀면	김동준	2015.05.18. ~ 2022.04.29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4-3((평거동)
(주)조선대가	조선불고기밀면	김동준	2022.04.29 ~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4-4((평거동)

3.[조선불고기밀면]업종

영업표지	업종	
조선불고기밀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돼지고기,면류

4. 바로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	1	1	-	1	1	-	1
제주	-	-	-	-	-	-	-	-	-

※ 법인전환 이전 현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직영매장임

5. 최근 3년간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점 수

(단위:개)

연 도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 감
2021년	0	0	0	0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6. [조선불고기밀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조선불고기밀면]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3년말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연간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0							
서울	0	해당없음						
부산	0	해당없음						
대구	0	해당없음						
인천	0	해당없음						
광주	0	해당없음						
대전	0	해당없음						
울산	0	해당없음						
세종	0	해당없음						
경기	0	해당없음						
강원	0	해당없음						
충북	0	해당없음						
충남	0	해당없음						
전북	0	해당없음						
전남	0	해당없음						
경북	0	해당없음						
경남	0	해당없음						
제주	0	해당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당 연평균 매출액을 다음과 같은 산정기준에 의거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복합양념등 공급 금액 × 3 [판매가(주류포함)/공급가]
 (불고기밀면에 들어가는 식자재 물품공급가 대비 판매가를 3배로 매출금액을 추정한 금액임)
 당사가 공급하는 식자재 공급가액으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8.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조선불고기밀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평균 영업기간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조선불고기밀면] 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13,995천원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진주중앙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36	055-743-1015
계좌번호	194-910044-53805(예금주:주식회사 조선대가)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첨부된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나은행] 에 [계약 체결시]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조선대가를 찾아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기관을 [하나은행]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체결시 세부내용을 재공지 하겠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한번도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 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사항 없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사항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 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사유	비 고
총 계	40평(홀형): 17,600 20평(배달형):8,800				
가입비	40평(홀형): 11,000 20평(배달형):5,500	계약 체결시	반환되지 않음	계약체결후 반환되지 않음	지원경비로 소요됨
교육비	40평(홀형) : 6,600 20평(배달형): 3,300	계약 체결시	시설공사 전 임대차 등의 문제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함	교육시기술전수 비 및 인건비로 소요됨	교육이 시작 되면반환되 지 않음

▶ 계약 이행보증금은 없습니다.

2) 식자재는 가맹본부 식자재 쇼핑물에서 직접 선결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행 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 (단위: 천원)	비 고
합 계	40평형(홀형):17,600, 20평형(배달형):880	
가 맹 비	40평형(홀형):11,000, 20평형(배달형)550	부가세 포함
교 육 비	40평형(홀형):6,600, 20평형(배달형):330	부가세 포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 고
		홀형	배달형				
총계		103,000	59,120				홀 형: 40평기준 배달형: 20평기준
인테리어 (내부)	가맹본부지정 업체	70,000	35,000	3.3㎡당 1,750천원 (VAT포함)	공사금액의 50% 공사완료 후: 공사금액의 50%	공사 전 계약취소	-홀 탁자 의자 포함 -귀하 자체 시공시 설계도면제공비200만원 과 평당 공사감리비20만원씩 부담해야함
간판	가맹본부지정 업체	6,600	4,400		공사완료시		전면간판,실내메뉴판, 션팅등
주방설비	가맹본부지정 업체	22,000	17,500		공사완료시	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류
집기류	가맹본부지정 업체				자재 수령후		홀/주방집기류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4,400	2,2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 ▶ 별도공사 : 외부공사,소방방염시설공사,전기증설공사,철거공사,화장실공사(정화조및 내부를 철거하고 재시공시),다트외부입상공사, 가스공사(배관 및 인허가),후드제작,상하수도외부공사,인허가사항,점포임대비용등
 - ▶ 자체구입품목 : 냉난방기, 컴퓨터,전자제품 일부 등
 - ▶ 건물 구조 및 가맹점사업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위 금액은 점포개설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제시된 금액은 점포구조 및 공사기간, 물가변동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준비기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이자 비용은 없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며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조선불고기밀면은 점포선정에 대한 상권분석 및 입지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입지를 선정하고 판단하는 최종 주체 및 책임자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희망자)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 신규교육을 이수한자	1)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아닌자로 국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건강할것.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것
종업원	일반음식점 근무가능한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예치가맹금은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하며 주방기기 대금등은 분납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총액	계약금(예치가맹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40평형: 17,600 20평형: 8,800	40평형: 17,600 20평형: 8,800	0	0
납부일		계약체결일	해당사항 없음(일시불 납입)	
비고	당사 하나은행 지정계좌로 일시불로 예치하여야함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등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200천원	익월10일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전국광고 시행시 분담금	협의일자			전국 광고비 총가맹점주 50%분담
판촉분담금		행사시 분담				판촉비 총가맹점주 90%분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금액	교육 실시 10일 이전			보수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협의금액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협의금액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0쪽 참조
지연이자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가맹점사업자가 없어 산출할 수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원/년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과 같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기간 5년이 종료된 후에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계약갱신시 당사에 지급 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단,시설노후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귀하의 부담으로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조선불고기밀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 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고 **[조선불고기밀면]**를 표창하는 표시가 포함된 일체의 저작물,

메뉴판, 와이드칼라, 메뉴판넬, 기업판넬, 인터넷상의 표시, 114안내 등을 즉시 제거 및 해지한 후 7일 이내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7일 초과시 초과한 날로부터 1일당 30만원씩 위약금으로 당사에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 초과일수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후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조선불고기밀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원부재료는 가맹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며 1차위반시는 구두경고, 2차위반시는 서면시정요구, 3차위반시는 즉시 계약해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조선불고기밀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조선불고기밀면]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조선순대국밥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1차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2차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조선밀면			
조선불고기밀면 등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본사 공급 품목(식자재, 공산품등 포함)에 대해서는 행운식품의 노하우 및 상표권등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재료 및 공산품 자체를 제3자에게 공급 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됩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제3자	당사 공급품목	조선불고기밀면의 노하우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위	1회 위반: 1차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2차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기타 법률사항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

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밀면(물,섞음,비빔)	6,000	인상시 홈페이지에 공지	2023. 12월 기준
병천순대국밥	7,000	인상시 홈페이지에 공지	"
불고기/소	12,000	인상시 홈페이지에 공지	"
불고기+밀면2그릇	20,000	인상시 홈페이지에 공지	"
만두+밀면2그릇	15,000	인상시 홈페이지에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불고기 또는 밀면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조선불고기밀면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포 중심으로 반경 1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단, 가맹점포가 배달판매 할 경우 가맹점포 영업지역을 초과할 수 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상권변화등의 사유로 귀하의 영업지역을 분할 하여 신규가맹점을 개점하는 경우 귀하에게 우선적으로 신규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귀하가 신설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직권으로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

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조선불고기밀면]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조선불고기밀면]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상기의 기재사항 외,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 (주)조선대가 가맹본부는 2022년 04월 29일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직영점외 가맹점 출점이 1건도 없어 가맹점 매출액은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입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계약기간 만료 90일전에 계약종료 의사통지를 하지않는 경우
계약갱신이 자동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1년단위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0조 제1항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 다른 가맹본부의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당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비고
○ 귀하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당사가 최고후 해지
○ 귀하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당사의 품질관리기준을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귀하가 당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귀하가 당사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귀는 당사가 지정한 취급상품과 권장가격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		
○ 귀하가 당사로 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다만,가맹계약서 제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2항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1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제2항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 제2항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 귀하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 제2항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 제2항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1개월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는 통지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가맹사업자가 본부와 의 채권 채무의 정산 및 교육과정의 이수 등 가맹점의 계속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 이행하고 양도승인을 요청할 경우 본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도를 금지하지 아니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검토(양수인 면담포함 7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 양수도 계약 체결(즉시)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055-746-0803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총 6,600천원(교육비6,600천원) 가맹본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 계약일지라도 가맹점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감액하여 신규계약으로 당사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상속인은 당사에게 별도의 가맹비등을 지불하지 않고 권리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 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3개월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승인을 받을것	
대리행사	불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광역시,도 단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조선불고기밀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불고기 또는 밀면등 조선불고기 밀면에서 취급하는 메뉴를 영업하는 행위	불가능	가맹사업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계산으로 가맹본부의 당해 브랜드와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조선불고기밀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 자율원칙	3일 이상 가맹본부의 허락없는 무단방치 금지	가맹본부와 협의하에 변동가능 (위반시 상품공급, 영업지원 중단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 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친절/음식관리(9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점검사항확인 → 점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본부	
위생/매장관리(8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점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조선불고기밀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70%	광고비 3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타 개별행사	행사별로 본사 가맹점협의후 부담금액 결정함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후 매월 가맹점사업자에게 당사가 공급한 물품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사전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 또한 그와 관련된 광고 판촉비용의 지원은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귀하가 제43조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⑤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사유(제31조)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금액은 가맹계약 해지전 까지 발생한 물품공급금액중 가장 큰 물품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물류마진율을 30%를 적용하여 계약 잔여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40평형:120,600천원 20평형: 67,920천원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개설승인,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 에 예치가맹금 입금	D-30	40평형:17,600 천원 20평형:8,800 천원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9~26 (3일)	40평형:103,000 천원 20평형: 59,120 천원 당사 지정업체와 별도계약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장애물철거 -OPEN일자 확정	D-25~22 (3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간판 및 배기닥터 공사 -주방기자재 입고 및 설치 -홍보작업	D-21~5 (16일)	
초도물품 입고	-초도물량입고 -이벤트행사준비	D-4~1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9~4(5일)	파견교육 또는 본사교육장
이벤트행사 및 영업개시	- 이벤트행사 - 가맹점 영업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 .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점포환경개선 요구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을"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알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구니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알채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알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 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합·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해당사항 없음	지원금액은 교육비에서 일부지원함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문의: 가맹본부 055-746-0803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055-746-0803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조선불고기밀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5일간 하루 5시간씩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교육	40평형 - 1일차 : 점포운영 기본예절 - 2~4일차 : 조리교육 - 5일차 : 점포운영 종합실무 20평형 - 1~2일차 : 조리교육 - 3일차 : 점포운영 종합실무	실습교육	가맹점 영업 시작5일전까지	필수교육
보수교육	신메뉴 개발	실습교육	필요시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조선불고기밀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40평형: 5일 20평형: 3일	있음	- 최초 가맹점오픈시 신규교육비 부담
보수교육	2일이내	있음	40평형:660만원(VAT포함) 20평형:330만원(VAT포함) - 보수교육은 협의하여 교육비 결정

입문교육 및 훈련시간은 최대 5일 범위 내에서 매일 5시간씩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상호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남	(주)조선대가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4-4(평거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023년 04월01일부터 직영점 운영(275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추정매출액	비고
594,493천원	2022년 04월01일부터 직영점 운영

※(주)조선대가 상호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영점 매출액은 2023년 (주)조선대가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동일합니다.(2023년 재무제표 첨부)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55-746-080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조선대가.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본사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1] 2022년,2023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2023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